



## 서대문구

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홍제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187호(2007.6.14.)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94호(2014.3.20.)로 변경된 '홍제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'에 대해 해당 조합으로부터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일반인의 공람과 의견청취를 완료 하였기에 동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의거 구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.

가. 사업의 명칭 : 홍제동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

나. 정비사업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57-5번지 일대,  
38,975㎡

다.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1) 성명 : 홍제동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: 김은규)

2) 주소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34길 21 3층

라. 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

마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  
: 해당없음

바. 건축물의 대지면적, 건폐율, 용적률, 층수 또는 높이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
1) 대지면적 : 38,975㎡

2) 건축면적(건폐율) : 7,579.9595㎡(25.29%이하)

3) 연면적(용적률) : 124,139.6120㎡(247.91%이하)

4) 층수(높이) : 지하4층, 지상17층 (최고높이 48.75m)

5) 용도 : 공동주택 10개동 795세대

사. 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
: 별첨

